

默齋日記에 나타난 家祭祀의 實態

鄭 肯 植*

차 례

- I. 머리말
- II. 家祭祀의 實態
 - 1. 忌日祭
 - (1) 尊 屬
 - 1) 父 系
 - 2) 母 系
 - 3) 妻 系
 - (2) 傍系親과 卑屬
 - (3) 기 타
 - 2. 四時祭와 俗祭
 - (1) 四時祭
 - (2) 俗 祭
- III. 家祭祀의 特徵
 - 1. 祭禮儀式
 - 2. 祭祀承繼
- IV. 맺음말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 韓國法制研究院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韓國法制史 및 古法典研究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번 호부터 관련 연구를 기획논문으로 수록하기로 한다. [編輯者 註]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전기 제사승계법제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 16세기 중엽 그 실태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조선초기 주자학과 주자가례의 수용에 따른 제사승계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¹⁾ 조선전기 祭祀承繼法制는 《經國大典》 <禮典> [奉祀], [立後]조와 《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과 실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계조상만을 제향조로 삼으며 봉사자의 品階에 따라 家廟에서 神主를 奉安하여 曾祖考妣까지 봉사하는 差等奉祀를 규정하였는데, 주자가례에 따른 四代奉祀는 평등적인 三代奉祀를 거쳐 16세기 후반에 그 단초가 나타난다. 그리고 봉사자는 父系長孫만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財産의 男女均分相續의 영향으로 諸子女輪回奉祀가 보편적이었다. 그 외에 外孫奉祀, 收·侍養奉祀 등 異姓奉祀가 나타나며, 婦女가 奉祀하는 冢婦法도 존재하였다. 국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제례는 일반화되지 않고 高麗的·佛敎的 제례가 잔존하였다. 朱子家禮에서는 四時祭, 初祖(始祖에 대한 제사), 禰(考에 대한 제사), 忌日祭, 墓祭 등을 제시하였는데, 사시제가 제일 중요한 제사이다. 國朝五禮儀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라 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祭, 忌日祭, 俗祭(정조, 단오, 추석, 동지) 등의 祭禮節次를 규정하였다. 기일제와 묘제가 중시된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도 一次史料가 아닌 후대에 편찬된 二次史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일상적이고 반복된 제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책과 규범이 아닌 실제의 제사관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제사승계와 관련된 分財記 등 古文書의 이용도 연대기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지만, 고문서는 내용이 단편적이며 사건의 최종적 결론만 보여주는 점에서는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 실록과 고문서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자료로 日記類를 들 수 있다. 일기자료는 실제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

1) 필자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6. 2.; “朝鮮前期 四代奉祀의 形成過程에 대한 一考察”, 『법제연구』 11호, 한국법제연구원, 1996. 9.; “16세기 奉祀財産의 實態”, 『고문서연구』 9·10합집, 한국고문서학회, 1996. 11.;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6.

른 어느 자료보다도 現場性과 即時性이 강하며 아울러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²⁾ 또 작성자 개인의 경험과 생활에 국한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생활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奉祭祀 接賓客”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상을 顯揚하는 祭祀는 생활에서 중요한 것으로 일기에서 생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기 속의 제사는 개인을 넘어선 사회전체의 제사실태까지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默齋日記》는 默齋 李文樞(1495[연산군 1]~1567[명종 22])이 41세인 1535년(중종 30) 11월부터 73세로 죽기 수개월 전인 1567년 2월까지의 일기이다. 실제 일기를 쓴 기간은 약 31년이지만, 중간에 결락된 부분이 11년 11개월이어서 현재 17년 8개월분이 남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金炫榮의 해제와 함께 1998년에 정서본 上卷(793면)과 下卷(736면) 2책을 『韓國史料叢書』 제41집으로 간행하였다.³⁾

이문건은 承文院 정자를 역임한 李允濯과 고령 신씨 사이에 출생하여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己卯土禍(1519; 중종 14) 때에는 중형 忠樞이 죽고 본인은 停擧되었다. 복권된 후 司諫院 正言(정6품) 등을 역임하였으나 다시 乙巳土禍(1545; 명종 1)에 연루되어 조카 輝는 사형을 당하였고 목재는 경상도 星州로 流配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문건의 가문은 성주의 土姓인 隴西公 李長庚의 후손으로 선초의 명문가였다.⁴⁾ 《목재일기》의 소장처가 충청도 槐山인 점에 비추어보면 그의 世居地는 충청도로 추정되며, 유배되기 전의 거주지는 宋時烈의 行狀과 《司馬榜目》에 따르면 서울이다. 이문건은 《默齋日記》에서 유배지의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 16세기 중엽의 사회상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 이미 《默齋日記》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소개되었는데, 필자는 이를 통해서 16세기 중엽 家祭祀의 實態, 특히 祭祀承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재는 관인이 아닌 양반사대부로 지냈기 때문에 官職活動에 따른 제사의 不舉行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16세기 중엽의 가제사의 실태는 다른 어느 자료보다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점에서 《默齋日記》의 또 다른 잇점이 있다.

2)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6., 222면.

3) 본고에서 “일기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상, 하”와 면수만 인용하고 서명은 생략한다.

4) 이상은 김현영의 해제(하-737~752면) 및 “16세기 한 양반사대부의 일상생활: 《默齋日記》를 읽고”, 조선시대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1999. 6. 5.) 참조.

II. 家祭祀의 實態

이문건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제사의 현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제사의 종류는 크게 忌日祭, 四時祭, 名日祭(俗祭), 生日祭, 影堂祭 등이 다섯 종류가 나타나며, 祭享先祖는 父系로는 考妣, 祖考妣, 曾祖考妣, 養曾祖考妣, 高祖 등 9위, 母系는 外祖考妣 2위, 妻系는 丈人·丈母 2위 등 모두 13位이다. 그리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妻가 거행하는 제사도 제법 된다. 그래서 정기적인 제사는 1년에 26번이나 되고, 부정기적인 것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다. 이 점을 보면 “奉祭祀”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이문건 혼자서 거행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와 제향대상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거행하였다. 제사 관련자의 家系圖는 [부록 2]와 같다.

1. 忌日祭

(1) 尊屬

1) 父系

① 先考 李允濯에 대한 제사는 두 종류로, 忌日祭(12월 26일)와 생일에 지내는 初度祭(10월 29일)이다. 막내인 이문건은 매년 빠짐없이 부 기일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제사장소는 서울에서나 배소인 성주에서나 모두 가묘가 아닌 집[堂]과 竹廳⁵⁾이다. 서울에서는 神主를 모셨으나⁶⁾ 성주에서는 紙榜을 쓰고 제사를 지낸 후 불살랐다.⁷⁾ 제사에 참여한 자는 아들 燾(1546)과 손자인 淑吉(1563), 從孫인 玄培(1553~7)와 壽祺(1556), 孫婿인 鄭涉(1561, 1563) 등이다.

부의 생신에 지내는 初度祭도 유배된 첫 해인 1545년에는 지내지 않았고,⁸⁾ 1562년에 근신만 한 것 외에는 집⁹⁾에서 모두 직접 지냈다. 제사에 참여한

5) 1535년 “○府君諱日 設祭于中堂”(상-12); 1552년 “○○○考生諱日 行祭于堂”(상-546); 1556년 “○掃正竹廳 …/○○○先考忌日 設祭于堂 …”(하-176); 1563년 “○掃淨竹廳 …/○○○先考忌日 祭于竹廳”(하-615).

6) 1535년 “○府君諱日 設祭于中堂 祭畢 復於朴姊氏神位 設糲·餅·酒焉 事訖 乃糊西窗穴 隙等處 外懸茅苳修整 然後入安神主故位焉”(상-12).

7) 1545년 “○作紙榜 書祝文 …”(상-184); ○乃焚祝文 及御題紙榜焉”(상-185).

8) 1545년 “○今日 乃先考生忌 而未爲例祭 …”(상-167).

9) 1562년 “○齋居不出入”(하-569); 1551년 “○○○先考生諱日 設祀于堂”(상-440).

사람은 燼(1546), 玄培(1551, 1553, 1554, 1557), 淑吉(1557), 壽祺(1561), 鄭涉(1563) 등으로 기일제와 같다. 또 천택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또 숙길은 옷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였다.¹⁰⁾

초도제는 제례 전에 근신하고 청소하는 것은 같으나, 절차면에서 기일제와 차이가 있다. 모상 중에는 朔望祭儀와 같이 하고,¹¹⁾ 紙榜 대신에 紙標를 사용하고 축문을 읽었다.¹²⁾ 때로는 축문을 잘못 써서 죄송해 하기도 하였고,¹³⁾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安峯寺에서 지내거나 그냥 보내기도 하였다.¹⁴⁾ 이런 점에서 기일제보다 덜 중시된 제사이다.

先妣 高靈申氏에 대한 제사도 先考와 마찬가지로 忌日祭(1월 5일)와 생일에 지내는 初度祭(3월 8일)가 있다. 기일제는 大祥이 끝난 1538년부터 거행되었는데, 처음에는 輪回奉祀를 하였다. 1545년에는 누이 가에서 紙榜으로 봉사하였으며, 목재와 조카 輝와 燼이 참여하였다.¹⁵⁾ 유배된 후에는 1558년과 1566년을 제외하고는 목재만이 집과 竹廳에서 지냈다.¹⁶⁾ 제례 전에 근신하는 것은 부에 대한 제사와 같다. 제사에 참여한 자는 부의 제사와 다르지 않고, 종손인 현배(1553~6)와 손자인 숙길이 도왔으며, 숙길은 축문을 읽기도 하였다(1562).

모의 初度祭도 상례 중에는 朔望祭儀와 같이 지냈고,¹⁷⁾ 1545년은 조카(제향자의 손자)인 輝가 홀로 지내고, 목재의 처가 제수를 보내고 목재는 불참하였다.¹⁸⁾ 유배된 후로는 이문건 혼자서 집에서 지냈다.¹⁹⁾ 제례절차는 근신하는

10) 1555년 “○天澤朝乃還 吾心有不及來參祭祀之恨焉”(하-62); 1563년 “○曉起召下家婢等 備具行事 涉執事 淑吉以無裙不參”(하-599).

11) 1536년 “○今日 乃先府君生辰 行祭于靈座前 如朔望儀”(상-64).

12) 1555년 “○留堂 齋戒 ○洗足及胸 ○題紙標及祝文 …”(하-62); 1563년 “○題紙標及祝文 ○掃淨竹廳”(하-599).

13) 1554년 “○○○先考生諱日 設祭于堂 與天澤行之 祝文內誤書 乙未日云 告神之詞差失 心極不安 至可罪也”(상-751).

14) 1553년 “○○○先考生忌日 家內有小疫 忌不得行祭 假設於安峯寺 性輪備設 天擇行之 午乃還”(상-661); 1556년 “○○○先人生忌日 適因家內入疫 不得設祀 空過”(하-161).

15) 1545년 “○先妣忌日 祭次 姊氏家早與輝 出青坡 則燼亦纔到矣 卽題紙榜 行祭焉”(상-108).

16) 1553년 “○○○先妣忌日 設祭于竹廳 與老成行之”(상-570); 1554년 “○掃竹廳 設屏席 ○○○先妣忌日行祭于堂”(상-678); 1557년 “○○○先妣忌日 設祭于竹廳 行過”(하-179).

17) 1537년 “○今以先妣生忌日 設祭于中堂 凡朔望及如此祭”(상-90).

18) 1545년 “7 ○婦備送祭物于修撰家 8 ○先妣生諱日 丑時行小祀 輝獨行之 予以往來洪宅 喪事 故未參焉 慮喪事後 難再見也 燼有疾 不來參”(상-140).

19) 1556년 “○留堂 齋戒 掃洒竹廳 ○○○先妣生諱日 設祭于堂 …”(하-106); 모의 초도제는 竹廳과 堂이 함께 나오고 있다.

등은 기일제나 부의 초도제와 같지만 규모가 작은 제사[小祀]였고,²⁰⁾ 참여자는 아들 燾(1548), 손자 숙길(1557), 從孫 현배(1552~4, 1556, 1557)이며, 숙길은 축문을 읽었다(1562).

② 祖考 李叔生에 대한 제사는 기일제(10월 29일)만 있다. 祖考의 제사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유배된 직후인 1545년이며, 목재가 거행한 적은 없고 단지 근신만 하였다. 조고에 대한 제사는 윤희봉사가 분명히 드러난다. 처음에는 목재는 거행처를 알지 못하였다.²¹⁾ 이후 거행처는 매년 바뀌었고,²²⁾ 그래서 조고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을 특별한 감정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²³⁾

祖妣 金氏에 대한 제사는 기일제(8월 17일)만 있다. 모상 중에도 제사를 지냈으며, 1550년 이후에는 짝수 해는 제사를 지냈고, 홀수 해에는 근신만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차례가 되어서임을 분명히 밝혔다.²⁴⁾ 그러나 예정자인 朴壅이 지내지 않을까 우려하여 차례는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서 빠뜨리지 않았다.²⁵⁾ 제사장소는 堂이나 竹廳이며 역시 紙榜으로 모셨고, 마지막에는 안봉사에서 거행하였다.²⁶⁾ 제사에 참석한 사람은 濟翁夫叟와 機仲兄, 奎星(1536), 壽祺(1552), 淑吉(1562) 등으로 祖考보다 많지 않다.

③ 曾祖考 李咸寧에 대한 제사는 기일제(1월 29일)로 1545년부터 나타나며 거의 3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냈고 나머지 해에는 근신만 하였다. 모의 사망으로 증조고에 대한 제사순서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부모대의 순서에 따라 제사를 지냈으며, 누가 봉사하는 지를 알 수 없었다.²⁷⁾ 제사차례가 정해진 후에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냈다. 봉사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延安宅 뿐이며(1555), 나머지는 他宅으로 기록되어 있다(1556, 1561, 1562).²⁸⁾

20) 1546년 “○○先妣生諱日 丑時設行小祀”(상-207).

21) 1545년 “○今日 乃祖考忌晨 不知祭行何處 可傷 齋素兩日而已”(상-162).

22) 1552년 “○○○祖考忌日 只齋素不祭 祭次他宅故也”(상-541); 이 표현은 1555년과 1561년에도 같다; 다만 1554년에는 거행가를 표시하고 있다. “○○○祖考忌日齋素 祭次崔宅衿”(상-746).

23) 1562년 “○○○祖考忌日 祭次每年歸他宅 故不得一度行之 只齋素”(하-565).

24) 1556년 “○○○祖妣金氏忌日 祭次于孫 行祭於竹廳”(하-144); 1558년 “○○○祖妣金氏夫人忌日 祭次親家 故設行于堂”(하-322).

25) 1554년 “○○○祖妣忌日 祭次朴壅家 慮或闕行 特設行於此 …”(상-732).

26) 1566년 “○○○祖妣忌日 設施食于安峯寺”(하-719).

27) 1545년 “○…忌祭適考妣之次 故乃備飯羹之具 擬當設行 29 ○曾祖考忌□□……□□略設素祠于書堂 書紙榜行之 事畢而焚 送□□……□□”(상-115); 1546년 “○曾祖忌日 不知祭行何處 素食而已”(상-195).

28) 1555년 “○○○曾祖考忌祭次延安宅”(상-777); 1556년 “○○○曾祖考忌日 祭次他宅

제사에 참석한 자도 손자들인 玄培와 淑吉뿐이다(1557). 그리고 內外曾祖考妣의 기일에도 근신하고 있다.²⁹⁾

曾祖考妣 趙氏에 대한 제사는 기일제(7월 29일)로 1551년 이후에 나타나며, 직접 지낸 적은 없으며 근신만 하였다. 谷山宅(1553, 1555, 1557)과 靑陽宅(1554, 1561)³⁰⁾에서 제사를 나누어 맡았다. 그래서인지 목재는 잊기도 하였다.³¹⁾

④ 養曾祖考 李繼寧에 대한 제사는 기일제(10월 6일)로 1545년부터 등장한다. 1546년 이후에는 정해진 제사차례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³²⁾ 그러나 차례는 아니지만 예정된 박서방과 수원택에서 지내지 않자 직접 지냈다.³³⁾ 제사에 참석한 자는 아들뿐이다(1546).

養曾祖妣 韓氏의 기일제(8월 14일)는 1536년에는 조카 輝(제향자의 長曾孫 弘捷의 자)가 지냈다.³⁴⁾ 이 역시 분담하여 봉사를 하였는데, 봉사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목재가 직접 봉성한 것은 한 해뿐이고(1554), 나머지는 안봉사에 제사를 맡겼다.³⁵⁾ 다른 제사참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목재의 경우 한 해에 증조고비와 양증조고비를 모두 봉성한 예는 없으며 “生”曾祖考妣가 아니라 “養”曾祖考妣로 표현한 점에서 호칭상 養家親보다는 生家親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16세기 중엽에도 義理上의 父子關係를 맺는다는 立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⑤ 高祖考 李師厚의 기일제(4월 25일)는 1551년에 처음 보이는데, 근신만 하였다.³⁶⁾ 목재가 직접 봉성한 해는 없으며 단지 安峯寺에서 제향하였다. 그

只齋素”(하-96); 1561년 “○忌日齋素 祭則次于他宅”(하-392); 1562년 “○○○曾祖考忌日 祭次他宅 齋素”(하-504).

29) 1551. 2. 2 “○昨日與今日 內外曾祖考妣金价川兩位忌日也 爲不鼓禁”(상-356); 내외 증조는 父[內]의 외조, 즉 陳外曾祖이다.

30) 1553년 “○○○今日乃曾祖妣忌晨 祭次于谷山宅邊 齋素而已”(상-636); 1554년 “○○○曾祖妣忌日 齋素 祭次靑陽宅子孫處”(상-727).

31) 1558년 “○以忌齋素食 29 ○○○今日曾祖妣忌辰 素食 只於南亭 州人共飧食 忘而啗其交土 可恨奈何”(하-310).

32) 1546년 “○明日養曾祖忌祭 當次于我 故定設飯床祭之計”(상-265).

33) 1552년 “○○養曾祖考忌日 祭次親家朴書房當次 而不知其設行與否 設祭於堂 丑時行祀”(상-539); 1555년 “○○○養曾祖考忌日 祭次水原宅 孫不敢虛過 備物行過”(하-56).

34) 1536년 “○輝以過養曾祖忌祭事入京 …(상-53); 14 ○今日養曾祖妣忌祭 亭洞家行之濟翁濟夫 來參云云”(상-54).

35) 1551년 “○○養曾祖妣忌日 家內不淨 不得行祭 只於安峯 方設行施食焉 齋素”(상-417); 1557년 “○○○養曾祖妣韓氏忌日 祭次于吾 因喪不得行祀 送米太行施食于安峯寺”(하-227).

36) 1551년 “○○○高祖忌日 屏琴不鼓”(상-386).

이유는 동리에 병이 도는 것 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³⁷⁾ 차등봉사를 규정하고 있는 國典에 따라 親盡하여 奉祀孫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³⁸⁾

⑥ 시조인 隴西公 李長庚과 文烈公 李兆年에 대해서는 성주에 유배된 후부터 지내기 시작하였다. 1년에 한 번, 대개는 2월에 安峯寺에서 승려들이 影幀을 모시고 거행하였다. 三獻을 하는데, 술을 쓰지 않고 茶를 쓰는 등 유교적 제례와 불교적 제례가 융합된 형태이다.³⁹⁾

그리고 특이하게 자기를 낳아준 조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默齋 본인의 생일(11월 28일)에도 제사를 지냈다. 서울에 있을 때에는 일반적이었고, 성주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슬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제사 때를 즈음하여 수령 등은 목재에게 祭需를 선물하였고 또 목재도 이에 감사하고 음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사를 매개로 한 선물[稱念]의 교환은 지역사회의 윤회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2) 母系

外祖考 申澹의 기일제(6월 5일)는 한 번 거행하였으며, 거행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參奉宅(1551)과 都事宅이다.⁴¹⁾ 참석자는 거의 없으며 특이하게 목재가 그의 孫壻 鄭涉의 참여를 말렸다.⁴²⁾ 목재는 기일을 잊어버리기도 하였다.⁴³⁾

外祖妣 鄭氏의 기일제(3월 25일)는 친손인 申溫⁴⁴⁾과 외손이 순서를 정하여 번갈아 지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바꾸기도 하였다.⁴⁵⁾ 특이하게 목재의 조

37) 1554년 “○令貴孫持米一斗五升 上安峯寺 請僧人 明曉設高祖考妣兩位施食之禮 高祖忌也 而里有病氣 不得設祭故也 25 ○○○高祖忌 齋素 安峯性輪處 設施食 以享之 信守行事云云”(상-706).

38) 1555년 “○○○高祖考忌日 行素 爲其絕主祭者 送米安峯 行施食”(하-8).

39) 1546. 2. 20. “安峯寺影堂行例祭 老僧釋心幹爲之 李夢辰初獻 吾次獻 李士謙終獻 皆用茶不用酒 祭”(상-202).

40) 1535년 “○今乃孤哀子生辰 婦備送餅糲及祭饌 因朝上食 祭于靈座焉”(상-5); 1536년 “○與輝守廬 以吾生日 婦備餅果 早送 卽祭于靈座前”(상-68); 1545년 “○生日也 … 常時生日 或祭先靈 而今敗如此 愁坐奈何”(상-176).

41) 1551년 “○○外祖忌日 行素齋居 祭次參奉宅”(상-397); 1554년 “○○○外祖考忌日 齋素 祭次都事宅云”(상-715).

42) 1562년 “○○○外祖考忌 祭次親家 設祀于堂 ○鄭涉來欲執事 使之勿參而休之”(하-538).

43) 1561년 “○朝下見 共食食 以忌齋行素 朝忘之 咀脯方覺之”(하-438).

44) 1537년 “○外祖妣忌日 祭行于申溫家 …”(상-94).

45) 1536년 “○輝入京 以看明日外祖妣忌祭于苧洞家故也 前年次當親家 而喪事不得行 申溫行之 今乃行之”(상-33).

카인 李輝가 부의 외조비, 즉 內[陳]外曾祖妣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목재의 종손인 현배가 조부의 외조비[陳外高祖妣]의 제사를 도왔다.⁴⁷⁾ 제사에 참석한 자는 친손과 외손인 申溫, 權常(1536)과 和父, 彦和(1545)이며, 신온은 집에 疫神이 있어서 이웃에서 제사를 지낸 경우도 있었다.⁴⁸⁾

3) 妻系

처의 부 金彦默의 기일제(7월 6일)는 혼자 또는 처(1551), 조카 壽祺(1553), 孫壻 鄭涉(1563)과 함께 지냈다. 손자 숙길과 정섭이 보통으로 참여하지 못한 때도 있었다(1562). 부득이 하게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고 안봉사에서 거행하거나⁴⁹⁾ 간단하게 거행하거나 근신만 한 예도 있다.⁵⁰⁾ 妻母 金氏의 기일제(10월 22일)는 혼자 또는 자(1546), 손자(1557, 1562), 손서(1562, 1563), 처(1546, 1556) 등과 함께 지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素食으로 보낸 경우도 있다.⁵¹⁾ 그리고 처가 남편과 별도로 근신한 예가 있다. 그 대상은 祖考(1553년, 1561년, 1562년 10월 4일)와 祖妣(1554년, 1562년 3월 11일), 曾祖考(1561년, 1562년 3월 29일)이며, 관계를 알 수 없는 선조도 있다.⁵²⁾ 妻系の 제사에 목재도 함께 근신하였다.⁵³⁾ 그렇지만 처계의 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봉사자를 기록한 것은 없다.

(2) 傍系親과 卑屬

목재에게는 朴氏와 李氏에게 출가한 누이가 둘 있다. 이휘는 박씨 가의 노비의

46) 1545년 “○○外祖妣忌日 李輝家行祭 朝起促進 和父已到 彦和隨到 共行祭 祭畢焚紙榜 乃餽之 敍懷而罷 吾亦還寓所”(상-146).

47) 1555년 “○○○外祖妣忌日祭次于吾乃行祀事 天澤助祭”(상-792)

48) 1537년 “○外祖妣忌日 祭行于申溫家 早往參之 權常亦來參 但溫家不送疫神云 借隣家以行 行畢移坐溫家 餽之 …”(상-94).

49) 1557년 “○○○聘君忌日 不得祭 只於安峯寺送米施食”(하-218); 1561년 “○以忌齋 素食 ○遺僮玉山于安峯 寄送香燭·銜紙·葡萄等 使說明曉丈人忌日施食 6 ○○丈人忌日 家內疫入 不得行祭 只於安峯 爲施食”(하-447).

50) 1554년 “○○聘君忌日 設祭極草草 綠子病篤 故不能備設焉 只薦飯羹瓜灸而已”(상-722); 1555년 “○○聘君忌日 畧設飯羹 祭味爽行過 以有病患 故不得備具 操心愼之”(하-30); 1556년 “○○丈人忌齋 行素 6 ○○丈人忌日 疫忌 不得行祭 只齋素”(하-133).

51) 1553년 “○○聘母忌日 不得設祀 只素食而過之”(상-659)

52) 1561년 11월 21일 “○妻氏以南氏忌日 素食”(하-485); 1558년 12월 3일 “○妻氏行寧海翁忌素”(하-350); 1563년 12월 3일 “○以寧海忌日 妻氏素食 …”(하-350).

53) 1562년 “○妻氏以祖忌行素 4 ○妻行忌素 吾亦去肉”(하-564).

도움을 받아 박씨 처의 묘제를 지냈다.⁵⁴⁾ 이씨에게 출가한 누이는 후손이 없어서 목재 부처가 제사를 직접 지내거나 玄培가 大姑母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⁵⁵⁾

목재에게는 1남1녀가 있었는데, 모두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딸은 1544년 5월 19일에 죽었고, 아들 燮은 1557년 6월 25일에 죽었다. 자녀에 대한 제사는 [표 1]과 같다.⁵⁶⁾

표 1: 자녀에 대한 제사

연도	종류	내용	연도	종류	내용
1546	녀 기일	素食, 근신	1546	녀 11. 1	모가 婢에게 제사거행 명
1548	녀 기일	간단히 婢가 거행	1561	녀 8. 24	망녀의 생일에 모가 거행
1551	녀 기일	모가 祭需 마련하여 거행	1566	녀 6. 14	조상 제사에 망자녀를 配食함
1555	녀 기일	天澤이 간단히 거행, 목재는 終獻만 봄	1566	녀 9. 10	
1556	녀 기일	마을의 疫神으로 불거행	1557	11. 26	母가 子의 祭祀時期 물음
1557	녀 기일	거행, 素食	1561	자 기일	疫氣로 불거행, 素食
1558	녀 기일	婢가 거행하고 목재는 初獻만 올리게 함	1562	자 기일	淑吉과 鄭涉이 거행
			1563	자 기일	거행
1561	녀 기일	마을에 疫氣가 있어 준비하였으나 불거행, 素食	1564	자 기일	素食
1562	녀 기일	거행	1565	자 기일	아들 숙길 거행
1563	녀 기일	거행	1566	자 기일	특별 내용 없음
1546	녀 10. 15	모가 거행	1567	8. 9	淑吉이 槐山에서 掃父墓

亡女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냈는데, 목재는 근신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하였을 뿐, 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는 직접 지내거나 婢에게 시켜 제사를 지냈고, 疫疾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亡子의 제사는 子壻가 거행하였고 딸보다 늦게 죽어서 제사에 대한 언급이 적다. 망자의 제사는

54) 1536년 8월 15일 “○輝往瑩洞 行朴姉氏墓祭 其奴莫同 朝來 先付桂果 以送”(상-54).

55) 1552년 11월 12일 “○亡姊李氏忌日 想無誠心設祭者 因妻氏之勸 曉行小祀于堂 與老成行之”(상-550); 1554년 11월 12일 “○十二日長姊氏忌日 天澤行祭于堂云 爲無主祭故也”(상-756); 1557년 “○○別坐姊氏忌日 設祭于下家 老成行之”(하-251); 1558년 “○○姊氏忌日 過祭于堂 并祭別坐”(하-345).

56) 時祀나 俗祭에서 亡子女를 配食한 것은 해당 부분에서 언급한다.

아들이 거행할 수 있지만, 망녀의 제사를 거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모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제사를 지냈다.

(3) 기 타

목재의 친인척 외의 인물에 대한 제사도 많이 보이지만, 특이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목재와 함께 조모상에 여묘살이를 하는 이휘를 대신하여 그 처가 시부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⁵⁷⁾ 이휘가 숙모(목재의 모)의 기일에 자기 모의 제사를 陪設하려고 하자, 목재는 禮文에는 어긋나지만 정으로 허용하였다.⁵⁸⁾ 玄培도 그의 先妣忌日에 별도로 제사를 지냈다.⁵⁹⁾ 그러나 先考와 祖考妣에 대한 제사는 보이지 않는데, 이들은 祠宇에서 집단적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⁶⁰⁾ 평민도 제사를 지냈는데, 모에 대한 제사만 나타나며,⁶¹⁾ 평민들도 일상적으로 考妣를 봉사하였다.⁶²⁾ 그리고 노비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냈는데, 다른 노비가 거행하였으며,⁶³⁾ 추석 등 俗祭 때도 같다.⁶⁴⁾

2. 四時祭와 俗祭

(1) 四時祭

서울에 있을 때 사시제는 일정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제향선조와 봉사자 별로 나누어 모셨다. 默齋家(1537. 5. 9; 1545. 8. 3)와 조카인 輝家(1545. 2. 28), 鄉校洞의 祖廟(1537. 5. 27) 등이 나타나며 임시로 지내기도 하였

57) 1536. 2. 24 “○曉 輝婦騎往西小門家 以過舅忌祭事也”(상-29).

58) 1537년 “○… 今以先妣生忌日 設祭于中堂 凡朔望及如此祭 輝必以其考妣位陪設 雖違禮文 於情得厚 不可以止之也”(상-90).

59) 1554년 “○天澤明日乃母忌云 令設行忌祭 13 ○天澤曉母氏忌祭于竹廳 哀哭 可憐”(상-731); 1555년 “○今日 天澤母忌也 備需祭之 從天澤意也”(하-41).

60) 후술 註 90, 91 참조.

61) 1537. 5. 18 “○斗星行其妣忌”(상-104); 1551. 6. 20 “○給祭物 使尙孫祭其母墓”(상-401); 1555. 7. 26 “○德母祭亡母云 送物”(하-36).

62) 1548. 5. 10 “○夜與主人共宿 東麓茅齋 多蚤不安 主人曉入其家行忌祭云 …”(상-331).

63) 1553. 8. 17 “○故奴也札初期 婢突今曲爲祭祀”(상-641); 1557. 12. 14 “○奴今金死日 三月爲祭云”(하-259).

64) 1562년 “○下人皆祭親 玉山假億今飯哭父云 可憐”(하-552).

다.⁶⁵⁾ 또 丈人の 廟(1537. 5. 19)에서 거행하였다. 제향자는 考妣이며, 시사를 지낼 때에는 亡子女를 耐食하였고,⁶⁶⁾ 때로는 시사와 별도로 婢⁶⁷⁾에게 망녀를 봉사하게 하거나 李燼의 妻가 夫의 男妹를 봉사하였다.⁶⁸⁾ 또 時祀日과 伯氏의 忌日이 겹치자 時祀와 함께 伯氏夫婦를 봉사하였다.⁶⁹⁾

제례절차는 小祀로 목재가 初獻을 婦와 子가 亞獻과 終獻을 하였고,⁷⁰⁾ 특정일에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정하였다.⁷¹⁾ 때로는 제례절차를 잊어버리거나 축문을 잘못 쓰기도 하는 등 기일제에 비해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⁷²⁾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유배 후에는 처(1546. 11.), 아들(1546. 11.; 1552. 8.), 손자와 손서(1562. 5.) 종손자인 壽祺(1552. 8.)와 玄培(1553. 2.; 1554. 2.; 5.; 1555. 6.; 1557. 2.; 5.)이며 나머지는 홀로 지냈다.

1년에 네 차례의 사시제를 모두 거행한 해는 1554년과 1558년뿐이며, 전혀 지내지 않은 해도 없다. 2월은 15회, 5월은 10회, 8월은 6회, 11월은 9회를 거행하였다. 사시제가 부정기적으로 거행된 것은 제사의 번거로움과 함께 속제와 같은 때이기 때문인데, 주자가례와는 달리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지 않았다.

(2) 俗 祭

속제는 名節(名日)에 지내는 제사로 제례절차가 간단하다. 명일로는 正朝(1월 1일), 寒食, 端午(5월 5일), 秋夕(8월 15일), 冬至와 重陽節(9월 9일)이 있으며, 앞의 네 명절의 차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正朝(설날)는 새해의 첫날로 제사를 지냈는데, 제향자는 考妣가 기본으로 함께 배향하였으며, 형님과 누이 각각 두 분을 배향하기도 하였고(1552,

65) 1546. 11. 14 “○○○設考妣位次 權行時祀 凡得飲食 不能無情 故舉此焉”(상-276).

66) 1551. 2. 7 “○○考妣位前 設時祀 以亡女耐食”(상-358) 등.

67) 1548. 2. 4 “春分 ○○○祀先以小祀 ○祭畢 令億今 祭亡女”(상-312); 1548. 5. 24 “○明欲設時祀 齋居 25 ○○○先兩位設行時祭 ○… 妻令婢復行亡女祭”(상-335).

68) 1559. 2. 19 “○○○考妣位前 設時祀 獨行之 ○亡子女祭于下家 子婦執事”(하-370).

69) 1552. 2. 25 “○○○丑時行時祀于考妣兩位 兼設伯氏伯嫂氏兩位 共祭 適今日伯氏忌 故不忍而行之”(상-477).

70) 1546. 11. 14 “○○○設考妣位次 權行時祀 … ○婦亞獻 子終獻”(상-276).

71) 1546. 7. 28 “○始計定八月初三日行小祀于考妣前 令釀酒沈茄(상-244); 8. 3 ○○○考妣位書紙榜設之 …”(상-246); 1548. 2. 2 “○與婦議之 定於四日春分欲祀考妣焉 卽釀甘醴(상-311); 2. 4 春分 ○○○祀先以小祀”(상-312).

72) 1548. 5. 25 “○○○先兩位設行時祭 ○… 忘初獻後讀祝一節 至侑食後覺而讀之 行畢 …”(상-335); 1556. 2. 8 “○○○行時祭 亡女配食 天澤助祭 但祝文內 落啓功郎三字 昏昧至此”(하-98).

1556),⁷³⁾ 亡女(1553년 이후)⁷⁴⁾와 亡子(1558년 이후)⁷⁵⁾도 배향하였다. 참여자는 玄培(1553~8)과 壽祺, 淑吉(1557), 鄭涉(1562) 등으로, 범위는 孫子, 孫婿, 從孫이다. 때로는 묘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순서에 따랐고,⁷⁶⁾ 시조에 대해서도 묘제를 거행하였다.⁷⁷⁾ 이는 1546년과 154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거행되었다. 寒食에 지낸 제사는 7회가 있는데, 선조의 墓祭를 거행하였으며, 분묘를 수축하는 등 주로 묘지와 관련되었다.⁷⁸⁾

端午祭祀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母喪 중에는 제사를 지내고 아울러 누이의 묘제를 거행하였다.⁷⁹⁾ 고비를 제향하였으며 때로는 문열공 묘소에 배알하기도 하고(1546), 影堂에서 차와 떡을 올렸다(1548). 5회를 거행하였는데, 1회는 時祭를 겸하여 지내기도 하였다.⁸⁰⁾ 실제로 단오에 제사를 거행한 예는 드물어 痘疫이나 疫氣가 심해서(1556, 1564), 養蠶으로 바빠서(1561), 집안이 不淨해서(1563) 제사를 거행하지 않은 것도 4회이며, 또 厄이 있어 점을 쳤으나 吉占을 얻지 못해 간단히 지내기도 하였다.⁸¹⁾

추석에는 考妣를 祭享하는 간단한 절차이다.⁸²⁾ 누이인 朴姉氏의 묘제를 거행하였고(1536), 亡子女를 配食하였다(1562, 1563). 현배(1553, 1555)와 수기(1553), 숙길(1561) 등이 참여하였는데, 숙길은 고모를 봉사하였다.⁸³⁾

73) 1552년 “○○○考妣位 兩姊氏 兩兄主 皆設紙標 行俗節祭 以致永慕 同生位 只薦酒果炙餅湯等數器 務從便簡 獨行之”(상-458).

74) 1553년 “○曉 設祭于考妣位前 … 以亡女子 配享”(상-569); 1554년에는 “○ … 婢復祀叔福乃撤”(상-677)라는 내용이 있는데, ‘叔福’이 망녀의 이름인 듯하다.

75) 1558년 “○○○祀先考妣 以亡子亡女陪食 玄培助祭 祭畢而味爽”(하-264).

76) 1545년 “○婢猪非昨出盧原 祭墓而還 先塋祭 姊氏當次 而奴尹山等備設云 使今金往設之”(상-107).

77) 1556년 “○具祭需 送梧峴隴西公墓 使天澤往祭 …”(하-88).

78) 1552. 3. 2 “寒食 ○宿樓山村申孫家 蓐食登七代祖考敬元公陵拜掃 大丘人設祭具 乃行事畢 遂令改整側石 加土于墳上 伐去木根 被之以莎焉”(상-479); 우리나라 가제사의 특징으로 墓祭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주 거행되었으며, 또 많은 일족들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친족집단을 결속시켰다.

79) 1536년 “○靈座前 設祭依式 與輝共行之 ○令箕星 往行朴姉氏墓祭”(상-39).

80) 1553년 “○○○考妣位 設祀兼時祭 …”(상-615).

81) 1562년 “○名日祭疑有厄 不可爲 呼字爲占 不得遇吉 4 ○朝下見 共飯 議以名日虛過爲未安 略備設薦事定之 … ○掃淨竹廳 ○向夕 書紙標出燭香合等物 5 端午日 ○○○先神位前 設粥·酒·炙·餅·糲·果物 鄭涉·淑吉執事 家中連有不吉之事 故不敢盛設”(하-531).

82) 1565년 “○○○先位設小祀以薦”(하-690).

83) 1561년 “○吉亦起出 祭日已曙矣 吉下東家樓 參祀其考及叔母”(하-457); 이문건은 1남 1녀를 두었기 때문에 ‘숙모’는 부모다 먼저 죽은 姑母이다.

모두 9회를 거행하였고, 시제와 겸하여 1회를 거행하였으며(1554), 가내가 불결하여 거행하지 않은 해도 있다(1566).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正朝 다음으로 중시된 속제임을 알 수 있다.

冬至에는 고비를 제향하고 팔죽을 사용하였고(1535, 1536), 망자녀를 配食하였고(1555), 천택이 제사를 도왔다(1551, 1556). 동지제는 4회를 거행하였고, 시제와 겸하여 지내고 또 1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행하지 않았다. 단오와 마찬가지로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 重陽節에도 차례를 지냈으며(1536), 또 망자녀를 配食하였다(1566). 속제는 고유의 관습을 반영하여 설과 추석이 중시되고, 또 사시제와 겸하여 결국에는 대체되어 갔다.

Ⅲ. 家祭祀의 特徵

1. 祭禮儀式

제례는 가묘에서 신주를 봉안하여 거행하는 것이 예이다. 우선 가묘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家廟는 주자가례와 그 의식의 보급을 가늠하는 것으로 16세기 중엽에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⁸⁴⁾ 가묘는 서울에 거주할 때 나타나는데, 가묘와 사당은 구별 없이 쓰이고 있지만, 사당이 더 빈번하다.⁸⁵⁾ 선조마다 별도로 마련하였고⁸⁶⁾ 또 가옥 형편 등을 고려하여 방 1칸을 祀房으로 삼았다.⁸⁷⁾ 서울에 거주할 때에는 가묘나 사당에서 제사를 거행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參謁하는 등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었다.⁸⁸⁾

84) 《各司受教》 <禮曹> 丙午 六月 十一日 “承 傳 … 士大夫家廟段 載在國典爲乎矣 或廢而不立 不知報本追遠之意 亦不爲當 各別申明舉行事”; 《受教輯錄》 <禮典> [祭禮] 仁宗 1 (1545)의 수교도 같은 내용이다.

85) 1537. 5. 27 “○曉起進鄉校洞 參祖廟時祭”(상-105); 1545. 1. 2 “○… 歷拜鄉校洞祖考祠堂”(상-107).

86) 1537. 3. 3 “○斗星與箕星進本家 以酒及花煎松餅 祠堂前薦之 …”(상-89); 4. 15 “○早進西小門家 參謁于祠堂 …”(상-97); 1545. 1. 5 “○○又晉谷山宅 拜于曾祖廟 … 入侍問安而出 上拜祠堂 …”(상-108); 1537. 5. 19 “○丈人廟應貞行時祭 妻備送麵餅箕星往助祭”(상-104); 주 85 참조.

87) 1537. 4. 1 “○朝進西小門家 拜于祠房前 輝方行參禮焉 …”(상-95); 1545. 1. 15 “○… 先由還家 歷拜考妣祠房 …”(상-112); 3. 21 “○水盤後 乃往拜祠房 入見壽祺等 ○自壽祺家 拜祠房”(상-145).

88) 1536. 2. 8 “○與輝共守廬 輝午入京 以告改葬事 于家祠也”(상-23); 1537. 4. 1 “○朝進西小門家 拜于祠房前 輝方行參禮焉”(상-95); 4. 5 “○朝進本家 告授正言于祠堂

그러나 사당이나 가묘가 아닌 祠宇에 神主를 봉안하는 비유교적 제례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목재가 配所에 도착한 즉시 그곳에 신주를 봉안하였으나,⁸⁹⁾ 곧 考妣의 神主를 龍仁의 仲氏 祠宇에 移奉하고 祭次件記를 송부하여 그에 따라 紙榜으로 조상제사를 나누어 모셨다.⁹⁰⁾ 이 절차를 주도한 자는 목재가 아니라 爛이었다. 그는 숙부를 무시하고 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겼다. 목재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며 만약 굳이 그렇다면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신주를 사우로 이봉한 후에는 목재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⁹¹⁾ 목재 고비의 봉사자는 長孫인 壽祺이다. 그런데 수기는 어린 嫡인지 배제되고 從叔인 爛이 從祖父인 목재와 상의하여 忠槿의 사우에 봉안하였다. 목재가는 가묘와 별도로 조상의 신주를 집단적으로 祠宇에 봉안하여 봉사한 듯하다.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가묘나 사방에서 신주로 봉사하는 유교적 제례가 아니라 가문별로 사우에서 조상을 봉사하는 전통적 제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神主는 조상이나 망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제례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⁹²⁾ 실제로 신주를 모시고 지낸 제사는 先考 忌日祭, 丈人, 子の 小祥과 기일⁹³⁾로 4회이며, 마지막은 婦가 한 것으로 목재가 신주로 봉사한 것은 3회뿐이다. 그렇지만 모의 大祥을 전에 신주를 改題하고⁹⁴⁾ 또 신주를 새로 만들었으며,⁹⁵⁾ 제사 후 방을 고쳐 신주를 봉안하였다(1535. 12. 26). 그렇지만 신주를 꺼

行畢”(상-96); 1545. 1. 15 “○先由還家 歷拜考妣祠房”(상-112); 3. 21 “○水盤後乃往拜祠房 入見壽祺等 ○自壽祺家 拜祠房 …”(상-145).

89) 1545. 9. 9 “○昏 奉移考妣□□神主來 姑安于房”(상-156).

90) 1546. 8. 19 “○此日爛奉移考妣神主于龍仁祠宇云云”(상-251); 27 “○爛奴君孫亦還龍仁修答付送 祭次件記亦送之 …”(상-253); 10. 5 “○明日養曾祖忌祭 當次于我 故定設盤床祭之計”(상-265).

91) 1545. 12. 10 “○… 有爛簡 詳言先考妣神主奉安于龍仁 爲未安云云 解答不然之意 使之傳送 …”(상-180); 20 “○爛奴貴石 持簡來傳之… 簡中言 神主奉安事 有叔父吾不當爲之云云 未可解也 答以誠不欲奉安 則置之之意還送”(상-183); 1546. 8. 25 “○爛奴貴石率君孫下來 得書見之 伏審先神位移安于龍仁仲氏祠宇之奇 傷怛不能已焉 …”(상-252).

92) 1557. 9. 5 “○水原朴通之奴 來傳書問 且悲爛妻神主无依處云云”(하-233).

93) 1535. 12. 26 “○○府君諱日 設祭于中堂 祭畢 …”(상-12); 1537. 4. 14 “○… 又來拜丈人神主 …”(상-97); 1558. 7. 10 “○… 小祥日先祭於神主”(하-306); 1559. 2. 3 “○子之神主 朝夕上食 婦爲之不哭 禁勿哭之故也 4 ○子婦朝夕上食于神主”(하-366).

94) 1537. 1. 3. “○輝於本家 行祭 改神主面 書己名奉祀之實 金魯氏來題云 申國柱助執事云云 暮出來 李爛·申國柱亦偕到 共宿”(상-79).

95) 1557. 2. 16 “○二道間有神主木否云云 答以無儲”(하-190); 8. 7 “○州人金億還自京… 悌甲有答 當造神主送槐山云云 …”(하-225); 1562. 5. 23 “○鄭涉還來 昨朝祭神主 卽發還云云”(하-535).

려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아서 목재가 방을 빌려주어 봉안한 예도 있다.⁹⁶⁾ 이는 신주를 모시는 유교적 제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의 제사는 紙榜이나 紙標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후 불살랐다.⁹⁷⁾ 紙榜을 사용한 제사는 9회인데, 7회는 忌日祭이며,⁹⁸⁾ 2회는 1546년 8월과 3월의 時祀이다.⁹⁹⁾ 지표를 사용한 제사는 모두 34인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紙標를 사용한 제사

종 류	대 상	수
기 일 제	先考(1563), 祖妣(1556), 曾祖考(1554, 7), 養曾祖考(1558), 外祖考(1562), 장인(1558)	7
초 도 제	先考(1555, 1558, 1561, 1563) 先妣(1552, 1556, 1561, 1562)	8
사 시 제	1551. 5; 1552. 2, 11; 1553. 2, 11; 1554. 2, 5; 1555. 6; 1557. 5, 11; 1557. 5; 1558. 11; 1559. 2; 1561. 2; 1562. 5	14
속 제	정조(1552), 단오(1562), 추석(1558), 동지(1551)	4
기 타	망녀(1558)	1

기일제에 지표를 사용한 것은 7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시제나 초도제이다. 따라서 紙榜은 기일제에, 紙標는 기타 제사에 神主 대응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제사에 따라 지표와 지방을 각각 쓰는 것에서 분명하다.¹⁰⁰⁾

96) 1536. 5. 9 “○暮文應四人來此 轉往崔都事廬 吾與輝亦隨往 則蔡氏憚神主 禁不許入之令 令纔出來 諸事已具 奈何 繼祖欲借吾寓家舍廊 始置神主 甚切 遂許之 昏乃罷還”(상-40).

97) 1545. 1. 29 “○曾祖考忌□□□□略設素祠于書堂 書紙榜行之 事畢而焚…”(상-115); 1552. 3. 6 “○又題生諱日祝文及紙標 8 ○○○先妣生諱日 設祭于堂 … ○ … 行事畢 焚紙標而撤之”(상-481).

98) 先考(1545), 先妣(1545), 曾祖考(1545, 8), 祖妣(1558), 外祖妣(1545), 丈母(1556)이다.

99) 1546. 8. 3 “○○○考妣位書紙榜設之…”(상-246); 11. 14 “○夕書祝文及紙榜 ○○○設考妣位次 權行時祀…”(상-276).

100) 1558. 8. 14 “○齋戒 午後書祭文紙標 又書十七日忌祭祭文紙榜等”(하-321).

사시제 등을 小祀로 여기는 제례절차와 관련하여 고찰하면 중요도는 신주, 지방, 지표의 순서이다. 그리고 신주보다 지방이나 지표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은 후술할 諸子女輪回奉祀의 관행 때문이다.

목재일기에 나타나는 제사의 종류는 忌日祭, 四時祭, 俗祭, 初度祭이다. 기일제의 대상은 부계는 考妣, 祖考妣, 曾祖考妣, 養曾祖考妣, 高祖考이며, 초도제의 대상은 고비이다. 사시제는 사중월인 2, 5, 8, 11월에 지내는 제사로 대상은 考妣이며, 망자녀도 配食되었다. 장인, 조고비는 독립적인 대상이었다. 그리고 기일제를 중시하였고, 선비의 초도제(1545, 8), 시제(1546. 8. 3; 1548. 2. 4), 추석(1565) 등과 망자기일제(1552. 11. 12)의 제사는 小祀로 지냈다.¹⁰¹⁾ 또 墓祭가 전반적으로 중시되었으며, 특히 안봉사에서 이장경과 이조년의 제사는 시조라는 점 때문에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거행되었다.

제례 전에 청소와 목욕을 하며 미리 紙榜과 祝文을 준비하였다.¹⁰²⁾ 祭需는 婢가 마련하였는데, 제대로 못하기도 하였고,¹⁰³⁾ 때로는 부인이 직접 장만하였다.¹⁰⁴⁾ 절차는 주자가례에 따랐으며,¹⁰⁵⁾ 예외적으로 자식 수만큼 차리기도 하였다.¹⁰⁶⁾ 祭日 하루 전에는 반드시 素食, 守齋, 齋素하였으며, 守齋日과 祭日에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근신하였다¹⁰⁷⁾. 이는 주자가례에 따른 것으로 金安國의 <祭祀之道>에 나오는 3일 동안 散齋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¹⁰⁸⁾

101) 예외적으로 선비의 기일제(1548)를 소사로 지냈다.

102) 1551. 11. 27 “○留堂服餌 齋居 ○掃廳設席 書祝文 題紙標以藏之 十二月·正月兩忌日祝·標亦預寫裝藏 ○…以齋居不出見 …(상-448); 28 ○○○考妣前行冬祭 天澤執事”(상-449).

103) 1545년 “○居同家 齋素…○令婢考整祭用之物備之 ○官婢一人來助役 夕去(상-184); ○婢億今不善造餅 又忘乾柿子 不出設之”(상-185).

104) 1554년 “○留堂 齋素…○妻氏昏上來 爲看祀事 ○○○先考忌辰 行祭于堂 天澤助祭”(상-767).

105) 1545년 “○○考氏忌日 略設饌品 曉行祭享 自讀祝文後 乃哭之 三獻進湯水 乃辭神而徹之 兼設妣位而祭之…”(상-184).

106) 1536년 “○○先考忌辰也 設略祀于此 以備子息之數而已”(상-72).

107) 1551. 5. 29 “○…齋居 ○僧性輪·釋閑來言 納紙及麥于官事下來云云 適以祀事 不出見 又不能飽之 30 ○○○考妣位行時祀 以亡女耐食”(상-396); 10. 28 “○鄭教授來請我適因祭齋不果往… 29 ○○○先考生諱日…”(상-440).

108) 김현영, 『호남지방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가족과 친족』, 『호남지방 고문서의 기초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58~9면.

2. 祭祀承繼

祭享先祖의 면에 특징은 우선 부계만이 아니라 모계와 처계까지 봉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父系承繼를 지향하고 규정한 朱子家禮와 經國大典과는 분명히 다른 고려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에는 봉사자의 품계에 따라 3대까지의 차등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자가례에는 고조까지의 사대봉사를 규정하고 있다. 목재는 고조에 대해 제사를 지냈는데, 직접 지낸 것이 아니라 親盡하여 奉祀孫이 없게 되자 비로소 안봉사에서 거행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의 차등봉사에서 주자가례의 보편적 사대봉사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봉사자의 측면에서 특징은 제사의 分割과 輪回를 들 수 있다. 부계친에 대한 제향자와 봉사자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목재는 이운탁의 3남이며 이운탁은 3남2녀를 두었다. 장자인 弘樾에게는 子 輝와 孫 壽祺가 있고, 차자인 忠樾에게는 子 爛과 孫 玄培가 있다. 장자승계를 규정한 法과 禮로는 祭祀承繼人이 될 수 없고 또 兄亡弟及의 變禮를 규정한 《經國大典》 <禮典> [奉祀]조에 따라도 충건의 자가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는 고비를 봉사하는 것은 형들이 먼저 죽고 叔父와 從祖父라는 尊長으로서의 지위에서일 것이다. 그리고 고비의 제사가 분리되고 있다. 즉 조고와 증조비는 직접 봉사하지 않았지만, 조비와 증조고는 봉사하였고, 양증조고비를 한 해에 모두 봉사한 적도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제사를 分割하여 輪回奉祀한 결과이다. 제사의 차례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으로 목재는 配所에서 제사차례를 몰랐는데, 爛이 제사차례를 알려주었다.¹⁰⁹⁾ 이러한 분할과 윤회봉사는 제사를 빠뜨릴 수 있으며,¹¹⁰⁾ 실제로 이를 우려해 祭次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¹¹¹⁾ 參祭者도 친손만이 아니라 외손, 사위까지 있어서 諸子女輪回奉祀와 外孫奉祀의 관습을 보여주고 있다.

109) 註 22와 91 참조.

110) 1553. 12. 28 “○西同昏還自京 見文應答書 … 但言祖上祭祀次到于宅 則每不行致闕 極不安心云云奈何奈何 …”(상-568).

111) 註 26, 34 참조.

표 3 : 제향자와 봉사자의 관계

제향자	횟수	다른 봉사자	參祭者	비고
先考	16회		燾, 淑吉, 玄培, 壽祺, 鄭涉	초도제 동일
先妣	16회	누이	輝, 燾, 淑吉, 玄培 ; 초도제 燾	註 16
祖考	불거행	他宅, 崔宅		註 22~24
祖妣	8회	朴 壘	濟翁夫叟, 機仲, 奎星, 壽祺, 淑吉	註 25, 26
曾祖考	6회	延安宅, 他宅	玄培, 淑吉	註 28, 29
曾祖妣	불거행	谷山宅, 靑陽宅		註 31
養曾祖考	6회	박서방, 수원댁	燾	註 33, 34
養曾祖妣	4회	輝		註 36
高祖考	5회			安峯寺 거행
始祖	17회		星州李氏 一族 등	安峯寺 거행
外祖考	1회	參奉宅, 都事宅		註 42
外祖妣	3회	申溫, 李輝	申溫, 權常, 和父, 彦和	註 46
丈人	13회	처	壽祺, 鄭涉	
丈母	14회	처	燾, 淑吉, 鄭涉	

* 거행횟수는 실제로 거행한 것과 부득이하게 廢祭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모계친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윤회승계하는 것이 뚜렷하다.¹¹²⁾ 처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처가 독립적으로 조상의 기일에 근신하고 가끔 목재도 동참하였다. 그리고 처가 시부의 제사를 주재하였고, 며느리가 남편을 제사하는 점에서 冢婦法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¹¹³⁾ 이러한 점에서 16세기 중엽까지 國典과 朱子家禮에 따른 제사의 장자단독승계가 확립되지

112) 註 46 참조.

113) 冢婦法에 대해서는 이순규, “朝鮮中期 冢婦法과 邑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참조.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부계친의 기일은 잘 지키고, 부득이하게 廢祭한 예가 거의 없는데, 장인, 장모나 외가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았으며, 목재가의 경우에도 박용 등의 폐제를 우려하는 점에서 완전한 윤희봉사보다는 “父系祖上-子孫”의 부계의 제사승계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

윤희봉사를 통한 제사의 분산은 뜻하지 않게 제사의 불거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奉祀田民을 마련하였다. 燭은 4촌 輝를 위해 분재한 봉사전민을 推及하지 않았다.¹¹⁴⁾ 이씨가로 출가한 누이가 죽은 후 그를 위한 봉사재산을 마련하려고 하였다.¹¹⁵⁾ 특히 망녀에 대한 것은 더욱 두드러진다.

IV. 맺음말

목재일기를 통해 16세기 중반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대부들의 가제사 실태와 그 승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례절차의 면에서는 서울에서는 가묘에서 신주로 봉사하였지만, 配所인 성주에서는 집에서 紙榜이나 紙標를 써서 봉사하였다. 16세기 중반에 서울 등지에는 가묘로 상징되는 유교적 제례가 상당히 보급되었지만,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사의 종류는 朱子家禮와 國朝五禮儀와는 달리 四時祭보다는 忌日祭가 중시되었으며, 사시제는 한식, 단오, 추석, 동지에 지내는 제사와 겹하여 거행되었다. 특히 紙標는 목재일기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기일제에는 紙榜을, 다른 제사에는 紙標를 사용하여 형식면에서도 양자를 차별하였다. 또 특이하게 禮法에 없는 考妣에 대한 初度祭는 상당히 중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朱子家禮보다는 國俗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조상숭배에 대한 전통적 관습이 16세기 중엽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4) 1546. 4. 29 “○燭書文記一丈壽祺母氏前 不推前分奉祀田氏云 卽着名署後日傳送之也 正如吾意合也”(상-215).

115) 1555. 4. 11 “○…書中欲賣青坡宅田民 成立奉祀家云云 …”(하-5); 1555. 11. 15 “○…賣青坡宅田民 買奉祀家舍事 更料之 涉於己私之疑 不欲爲之云云”(하-67); 1557. 1. 9 “○李_高敏簡喻 別坐宅 奉祭田民斜給事”(하-181); 1557. 1. 17 “○別坐姊氏神主 依李_高敏_高敏欲得李氏祭位田民 故以奴四口番十斗 成文呈州牧 斜出”(하-182).

父系の 조상은 考妣에서, 高祖考와 始祖까지 제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조고비와 처부모도 봉사하고 있다. 이는 부계조상만을 봉사하는 禮法과 다른 것으로 外孫奉祀의 전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조인 李長庚과 李兆年은 기일 등에 직접 봉사하지 않고 주로 2월이나 간혹 3월에 安峯寺에서 승려들이 봉사하게 하였다. 이 제례는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茶를 쓰는 등 불교적 제례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안봉사는 후에 安峯書院으로 되어 이들을 현재까지 배향하고 있다.¹¹⁶⁾ 그리고 疫氣가 있거나 바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가에서가 아니라 安峯寺에서 제사를 대신 지냈다. 이러한 점은 유교적 제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점차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高祖考도 기일은 준수하였으나 親盡하여 봉사할 자손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가 아니라 安峯寺에서 제향을 올렸다. 그러나 親盡하면 墓祭로 가는 것이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봉사하는 것은 국전의 3대까지의 差等奉祀에서 주자가례의 사대봉사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祭祀主宰者는 長子の 單獨奉祀가 아니라 諸子女들이 分割·輪回하여 봉사하고 여성, 즉 婦가 남편이나 망자녀를 봉사하였다. 이러한 예법과 어긋나는 제사승계방식은 16세기까지 보편적인 것이었다. 제사의 차례는 미리 후손들이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였다.¹¹⁷⁾ 그러나 祭次가 되어도 봉사하지 않아 스스로 봉성한 예가 간혹 나타난다. 특히 사위나 외손의 경우에 보이고 있다. 또 목재도 考妣 등 부계선조의 제사를 잊어버린 적은 없지만, 외조부 등의 제사에는 늦게 散齋를 하는 예가 나타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자녀 윤회봉사에 따라 祭祀를 빠뜨리거나 경시할 우려는 상존하였고, 사위나 외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것이 조선후기 父系先祖-男系子孫의 제사승계로 진이되는 이유일 것이다.¹¹⁸⁾

목재일기를 통하여 16세기 중반의 가제사실태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주자가례에 따른 제사보다는 종래의 관행에 따른 제사가 두드러지지만, 주자

116) 거기에 있는 文烈公 李兆年의 影幀은 손에 든 엄주를 후대에 지워 어색하다(하권 <사진 4> 설명 참조).

117) 祭次에 따른 윤회봉사는 17세기의 전라도의 全州柳氏家의 <忌祭次例>에서도 보인다. 김현영, 전계논문, 253~7면 참조.

118) 1669년 부안 김씨 金命說의 <傳後文書>에 諸子女輪回奉祀에서 諸子輪回奉祀로 되는 내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사위나 외손이 제사를 정성스레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고 그 대신 딸에게는 상속분을 1/3로 줄였다(『古文書集成2: 扶安扶安金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581면 참조).

가례에 따른 제사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16세기는 주자가례에 입각한 경국대전외의 제사승계법제가 사회에 정착되면서 훨씬 주자가례적으로 변모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목재일기만으로 16세기 중엽의 가제사 실태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앞으로 조선왕조실록 등 연대기자료와 분재기 등 고문서, 나아가 다른 일기자료, 예컨대 眉巖日記草(柳希春; 1513~1577), 鎖尾錄(吳希文; 1539~1613), 草澗日記(權文海; 1534~1591), 松澗日記(李庭檜; 1542~1612; 일기 1577. 3.~1612. 6.) 등을 통한 연구로 역사상을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부록 1-1: 李文樞 제사의 현황(1. 1. ~ 7. 6.)

종류 연도	正朝 1.1	先妣 1.5	曾祖考 1.29	時祀 2월	寒食	影堂	先妣 生日 3.8	外祖妣 3.25	高祖 4.25	時祀 5월	端午 5.5	外祖考 6.5	丈人 7.6
1536	◎	小祥	×	×	3. 5	×	小祥	◎	×	×	◎	×	×
1537	◎	大祥	×	×	2.17	×	大祥	○	×	8	×		
1537년 6월 4일 ~ 1544년 12월 누락													
1545	◎	○	◎	28	2.15	×	×	○	×	5월~8월 누락			
1546	×	◎	△	×	×	20	◎	△	×	×	◎	△	×
1547	◎	◎	△	2월 ~ 12월 누락									
1548	×	◎	◎	4	6	1	◎	△	×	25	◎	△	
1548년 7월 ~ 1550년 12월 누락													
1551	◎	◎	◎	7	×	9	◎	△	△	30	×	△	◎
1552	◎	◎	△	25	3. 2	15	◎	△	×	×	×	△	△
1553	◎	◎	△	16	×	3	◎	△	×	=	◎	△	◎
1554	◎	◎	◎	6	×	15	◎	△	▽	28	×	△	▽
1555	◎	◎	△	12	×	15	◎	◎	◎	6. 1	×	△	◎
1556	◎	◎	△	8	×	20	◎	△	×	×	▽	△	▽
1557	◎	◎	◎	13	2.26	2	◎	△	◎	16	×	×	▽
1558	◎	×	△	19	×	9	◎	△	◎	20	×	△	◎
1559	◎	◎	△	19	×	15	◎	△					
1559년 4월 24일 ~ 1561년 1월 7일 누락													
1561			△	7	×	15	◎	△	×	×	▽	△	▽
1562	◎	◎	△	×	×	3.2	◎	△	◎	24	◎	◎	◎
1563	◎	◎	×	×	×	8	◎	×	×	20	▽	△	◎
1564	◎	◎	△	30	×	4	◎	×	×	×	▽	△	◎
1565	◎	◎	△	15	2.25	10	◎	◎	△	×	×	△	◎
1566	◎	×	◎	15	×	5	◎	△	×	17	×	△	◎
1567	◎	◎	△	2. 16 목재 별세									

비고 * ◎: 主宰 ○: 參祭 △: 謹慎 ▽: 廢祭 ×: 不舉行 =: 時祀와 俗祭의 兼祀
 * 影堂祭日은 1552년 외에는 2월이므로 날짜만 표시함
 * 俗祭와 時祀(2, 5, 8, 11월)는 날짜만 표시함

부록 1-2:李文樞 제사의 현황 (7. 29. ~ 12. 26.)

종류 연도	曾祖妣 7.29	養曾 祖妣 8.14	祖妣 8.17	時祀 8월	秋夕 8.15	養曾 祖考 10.6	祖考 10.11	丈母 10.22	先考 生日 10.29	목재 생일 11.28	時祀 11월	冬至 11월	先考 12.26
1535	11월 1일부터 시작									○	×	17	○
1536	×	○	○	×	○	×	×	×	○	○	×	29	○
1537년 6월 4일 ~ 1544년 12월 누락													
1545	9월 배소 도착					△	△	△	×	△	×	×	○
1546	×	△	△	3	○	○	△	○	○	×	14	×	○
1547년 2월 ~ 12월, 1548년 7월 ~ 1550년 12월 누락													
1551	△	▽	△	×	×	△	△	△	○	×	×	27	○
1552	△	△	○	7	×	○	△	○	○	×	27	×	○
1553	△	△	△	×	○	△	△	▽	▽	×	28	×	○
1554	△	○	○	15	=	△	△	○	○	×	27	×	○
1555	△	△	△	×	○	○	△	○	○	×	=	27	○
1556	△	△	○	21	×	△	△	○	▽	×	×	▽	○
1557	△	▽	△	×	×	△	△	○	○	×	28	=	○
1558	△	△	○	15	=	○	△	○	○	×	28	×	○
1559년 4월 24일 ~ 1561년 1월 7일 누락													
1561	△	△	△	×	○	○	△	○	○	×	×	×	○
1562	△	△	○	×	○	△	△	○	△	누락			
1563	△	○	△	×	○	△	△	○	○	×	27	×	○
1564	△	△	○	×	○	○	△	○	○	×	28	×	○
1565	△	△	△	3	○	△	△	○	○	×	28	×	○
1566	×	×	▽	×	▽	△	△	○	○	×	×	×	○

* 1537년 1월 5일 母 大祥 3월 18일 母 禱祭 거행 母喪終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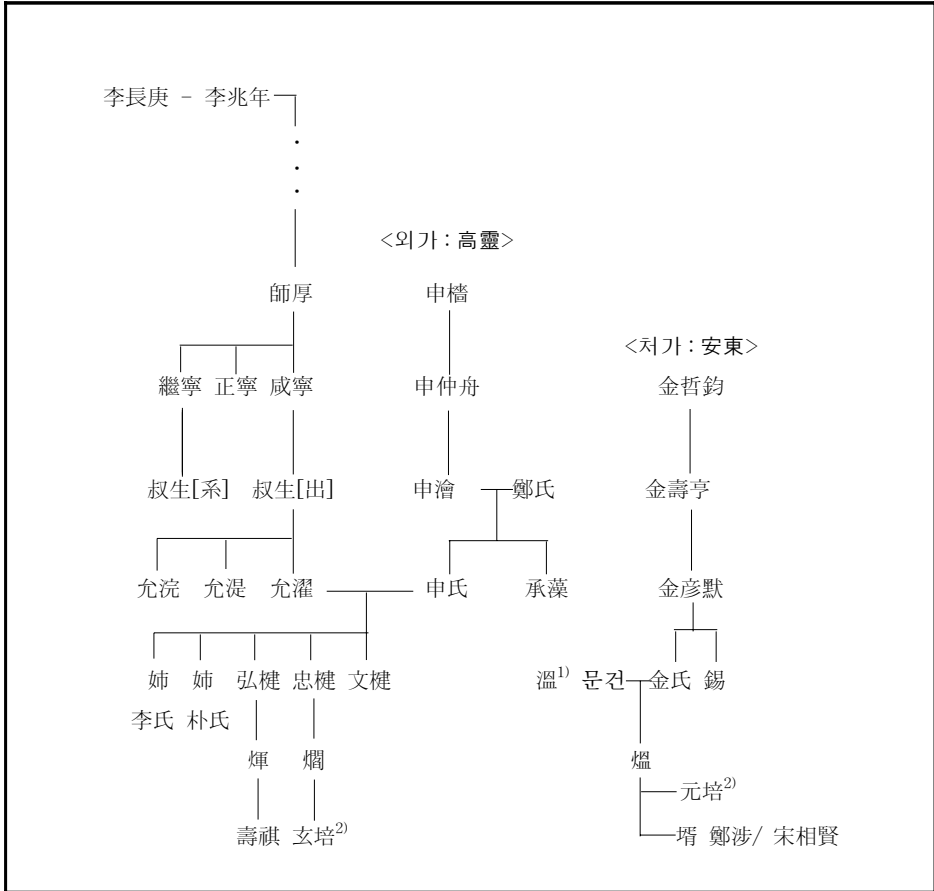
* 1545년 9월 16일 유배 결정, 9월 28일 配所 도착

비고 * 1554년 5월 19일 女 사망, 1557년 6월 25일 子 사망;

* 1566년 11월 12일 부인 별세

* 1536년 9월 9일과 1566년 9월 10일 重陽節 차례 거행

부록 2: 關聯者 家系圖



- 1) 족보에는 承藻가 있고, 溫은 보이지 않는데, 승조는 목재의 위삼촌이 된다. 일기의 내용 상으로는 목재와 온은 대등한 관계로 나타나므로 승조가 부이고 온이 자인 듯하다.
- 2) 玄培의 兒名은 天澤, 字는 老成이며, 元培의 兒名은 淑吉로, 일기에는 모두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玄培와 淑吉로 표기한다.

* 출전: 萬家譜(민창문화사 영인본), 萬姓大同譜(민창문화사 영인본), 韓國系行譜(보고사 영인본), 宋時烈 撰, “行狀”, 『國朝人物考』中, 서울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78; 목재일기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